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가 예금인출 등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금고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개정('24.10.8.)된 것에 맞추어,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인 금고가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안 제7조)

새마을금고는 예금인출 등의 긴급·불가피한 사유로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차입하려는 경우,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내외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승인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신용협동조합법, 농협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수

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피표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이내인 경우
: 신용공제대표이사
2.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7조(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u> <u>외) 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u> <u>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u> <u>여 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u> <u>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u> <u>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u> <u>1. 금고의 출자금 또는 자기자</u> <u>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 이</u> <u>내인 경우 : 신용공제대표이사</u> <u>2.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u> <u>를 초과하는 경우 : 행정안전</u> <u>부장관</u>
<u>제7조 ~ 제13조 (생 략)</u>	<u>제8조 ~ 제14조 (현행 제7조부터</u> <u>제13조까지와 같음)</u>